

영등포구의회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70호로 2018년 4월 5일 유승용 의원 대표 발의로
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
조성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 우리 구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
심의, 자문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
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3조)

- 다.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위원장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사항 규정(안 제8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: 환경정책기본법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8. 4. 5. ~ 4. 10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, 자문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3조는 우리 구 환경정책의 심의·자문을 위해 서울특별

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4조~제7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였고
- 안 제8조~제15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및 소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규칙으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”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환경위원회 위원을 환경정책 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음.

○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 이후 빠른 고속성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 및 다양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전 문제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전문가, 환경활동가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환경정책이 만들어 질 수

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본 조례안은 2010. 2. 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위원회”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동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환경정책기본법』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.>

1.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2. 환경기준·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 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·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5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6.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·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8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, 재질·구조의 개선,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
 - 8의2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
 9. 그 밖에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·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

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~ ④ 생략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』

제21조(구민참여 등)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,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02.12.31, 2005.11.24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를 둘 수 있다.<신설 2002.12.31>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2.12.31>